

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587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11. 19.

제 출 자 : 고 성 군 수

1. 개정이유

-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진작으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에 별정직 공무원으로 배치된 이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함에 따른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함

2. 주요골자

- 읍면 확대배치에 따른 총정원 증가 : 별정직8명 => 일반직15명(전읍면)
- 고성군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 개정 : 549명 => 556명(증7명) (안 제2조)

3. 참고사항

- 근거법령
 -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전환 및 신규채용지침
『자치12200-11269('99. 10. 6)』

4. 본 문 : 붙임과 같음

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2조중 “549명”을 “556명”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“536명”을 “543명”으로 한다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정원에 관한 적용례)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31일까지는 [표 1] 을, 2001년 7월 31일까지는 [표 2] 를 각각 적용한다.

[표 1]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표

구	분	정원
정 원 의 총 수		591 명
1. 집행기관의 정원		578 명
2. 의회사무과의 정원		13 명

[표 2]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표

구	분	정원
정 원 의 총 수		578 명
1. 집행기관의 정원		565 명
2. 의회사무과의 정원		13 명

③(직급별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)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2항 [표 2] 및 제2조의 규정에 대한 정원관리기관별·직급별 정원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정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<u>549명</u>이며,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536명</u></p> <p>2. (생 략)</p>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----- <u>556명</u> 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----- : <u>543명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